

의안번호	2212472
의 퇴 인	양부남의원
회 답 일	2025.11.17.
추 계 번호	25B4646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조의4 (시설점검)	공원관리청은 제19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관리 시 시설의 오작동,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·관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은 도시공원의 비상벨 등 시설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공원 관리청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규정
1	안 제19조의4 (시설점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공원관리청이 법 제19조의2¹⁾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관리 시 시설의 오작동,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·관리사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, 개정안이 시행되어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유지·관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런데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운영실태 및 유지·관리사항의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점검방법과 점검주기, 인력·장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현시점에서는 도시공원별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오작동, 오인신고 발생건수, 추가 점검 인력증원 규모 등 추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확정적이어서, 해당 시설점검 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1) 제19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·관리)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이하 "공원관리청"이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도시공원별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설치 현황

(단위: `25.8월말 기준, 개소, 설치대수)

구 분	조성된 공원수	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		비상벨	
		설치 공원수	설치수량	설치 공원수	설치수량
계	17,566	12,460	56,805	7,918	30,900
서 울	2,001	1,830	16,631	1,784	13,559
부 산	515	358	1,294	95	917
대 구	635	536	1,383	196	720
인 천	795	525	3,568	517	3,122
광 주	446	423	1,556	326	579
대 전	461	363	410	213	1,218
울 산	525	386	1,788	194	533
세 종	235	107	466	113	201
경 기	4,792	3,563	15,603	2,590	5,183
강 원	664	491	1,180	130	513
충 북	788	647	1,709	194	395
충 남	884	613	2,095	394	549
전 북	778	491	1,544	253	371
전 남	915	525	1,931	225	1,061
경 북	1,099	694	2,321	258	619
경 남	1,800	699	3,058	368	1,092
제 주	233	209	268	68	268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